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규약

2013. 3. 02. 제정
2013. 3. 12. 제1차 개정
2015. 3. 14. 제2차 개정
2017. 6. 16. 제3차 개정
2018. 3. 24. 제4차 개정

전 문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굳게 단결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확립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노동자로서 권리를 확보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장애인과 활동지원서비스노동자 모두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노동조합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하며 약칭은 활동지원사노조라 하고 영문 표기와 그 약호는 National Disabled Personal Assistant Labor Union (N.D.A.U.)으로 한다.

제 2 조 (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132에 둔다.

제 3 조 (목적)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활동지원서비스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활동지원사의 단결과 함께 장애인사회서비스의 올바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사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2. 노동조건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가맹지부(지회)간의 공동정책결정과 이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조직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항
5. 기업 경영의 민주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위한 사회개혁에 관한 사항

7. 타노조 및 노동단체 그리고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8. 사회민주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6 조 (가맹) 조합은 결의에 의해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7 조 (조직대상) 전국의 활동지원사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 8 조 (조합원 자격) 본 규약에 찬동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다.

제 9 조 (조합원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제67조 1호의 사유로 제명되었을 때
3.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한다.
4. 일시정지 : 조합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

제 10 조 (지도위원 및 고문)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지도위원 및 고문 또는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제 11 조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 사항 또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 3 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 12 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제 13 조 (조합원의 의무) 이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결의 사항을 준수한다.
2. 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기타 협정을 준수한다.
3. 조합 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킨다.
4. 조합비 및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한다.

제 14 조 (조합비)

1. 조합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지부 및 지회에 운영비로 지급한다. 다만, 일정비율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3. 조합은 필요시 지부 또는 지회에 조합비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5 조 (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 | | |
|------------|------------|------------|
| 1. 총회 | 2. 대의원대회 | 3. 중앙집행위원회 |
| 4. 정책위원회 | 5. 선거관리위원회 | 6. 쟁의대책위원회 |
| 7. 회계감사위원회 | 8. 편집위원회 | 9. 특별위원회 |

제 16 조 (성립 및 결의) 조합의 규약이 정한 각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로써 성립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제2호의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제3호의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구성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1. 조합의 분할, 조직형태 변경,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1호, 3호에 해당하는 긴급동의의 성립
5. 제38조 1호 나목의 번복 결의에 관한 사항

제 18 조 (회의)

1.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위임한 다른 임원이 대신 할 수 있다.
2.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제규정) 본 조합의 처무, 회계 등 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 절 총 회

제 20 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정기대의원대회로 같음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대의원 혹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총투표로 같음할 수 있다.

제 21 조 (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적어도 7일전에 회의장소와 부의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7일간의 공고기간을 다시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2 조 (의결사항) 총회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사항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다음 각호의 안건을 의결한다.

1. 조합의 규약 및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중앙집행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임원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에 관한 사항
8. 단체협약 인준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에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설치, 처분에 관한 사항
11.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산하기구의 합병, 분할 및 폐지, 명칭개정에 관한 사항
13. 지부,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14.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5. 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분할,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6.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7. 상급 단체 파견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8. 임원의 사임 수리 및 보선에 관한 사항
19.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20. 조합비 징수에 관한 사항
21.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 23 조 (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당연직 대의원과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1. 당연직 대의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장, 지회장으로 한다.
2. 조합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이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집일을 연기할 수 있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연서 명기하여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한다.

제 24 조 (소집공고) 대의원대회의 소집 공고는 대회일로 부터 적어도 7일 이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5 조 (기능) 대의원대회는 제22조 8호 및 전체 조합원이 직선으로 선출한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 3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 26 조 (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상설위원회 위원장, 지부장, 지부 사무국장, 지부 지역지회장과 사무국장이 제청하여 위원장이 임명한 사무국의 각 부장, 차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7 조 (기능)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수입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부 및 지회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업무집행 및 운영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각 지부 업무 지시 및 지도사항

5. 각 지부 및 지회 임원의 추인
6. 각 지부 및 지회의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건의안 채택
7. 각급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임원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9. 사고지부, 지회의 수습처리와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10. 조합 및 각 지부, 지회의 쟁의발생 및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11. 단체협약의 교섭에 관한 사항
12.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13.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4. 임원의 사임 수리 및 보선에 관한 사항
15.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16.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각종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8. 단체교섭위원 선출 및 사임수리에 관한 사항
19.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0.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징계 처분된 자에 대한 심의 결의
21.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정책위원회

제 28 조 (정책위원회) 조합은 전체 장애인사회서비스에서 활동지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정책비판 및 대안 개발 기능을 적극 강화, 육성키 위해 정책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 29 조 (구성 및 소집) 정책위원의 임면은 정책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고 정책위원회의 소집은 정책위원장이 한다.

제 5 절 편집위원회

제 30 조 (편집위원회) 조합은 기관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 31 조 (구성 및 소집) 편집위원의 임면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고 편집위원회의 소집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제 6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2 조 (선거관리위원회) 조합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3 조 (선거관리규정)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절 쟁의대책위원회

제 34 조 (구성 및 소집)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발생시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중앙 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구성한다.

제 35 조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조합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제 8 절 특별위원회

제 36 조 (특별위원회)

1. 조합은 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그 위원장은 조합의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5 장 임원 및 권한

제 37 조 (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국장 1명
5. 회계감사위원 3명 이내

제 38 조 (임무) 조합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 나.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권을 지니며 대의원대회에서 번복되지 않은 한 유효하다.
 - 다. 조합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라. 사무국 부장, 차장 등과 부서 담당자에 대한 임면권자가 된다.
 - 마.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명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다만, 중앙집행위원회 전까지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4. 사무국장
 -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나. 조합 사무국 각 부,차장 임면의 제청권을 지니며 지부 실무자회의의 소집권을 지닌다.
 - 다.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라. 각종 회의의 회의 자료작성의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마. 회계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위원
 - 가.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며,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 6 장 선거와 임기

제 39 조 (임원의 선출)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선출은 전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선거로 의하며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선출하는 임원의 종류는 위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부위원장 약간명이며,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한다.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및 대의원이 추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4. 조합의 임원은 임기만료 전 15일에서 45일 사이에 선출한다.
5.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40 조 (임원의 임기) 조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 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 41 조 (임원의 보선)

1.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보선을 하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42 조 (대의원 배정 및 선출)

1. 대의원은 각 지부 또는 지회 단위로 조합원 10명마다 1명씩으로 하고 단수 5명 이상일 때는 1명을 추가한다. 다만 10명 이하의 지부 또는 지회에도 1명을 배정한다.
2. 각 지부 또는 지회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 또는 지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제 43 조 (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 44 조(부서) 사무국에는 몇 개의 부서를 두고, 각 부서에는 부장 1인을 두며, 약간 명의 차장을 둘 수 있다.

제 45 조 (임무) 사무국 산하 각 부서의 임무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재 정

제 46 조 (재원)

1. 조합의 재원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잡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조합의 기금 설치와 처분은 총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3. 조합의 회계운영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항상 공개해야 한다.

제 47 조 (고정자산의 처리) 조합의 고정자산관리 및 처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

처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48 조 (특별기금) 조합은 필요에 따라 쟁의기금 등 특별기금을 둘 수 있다.

제 49 조 (예산확정) 조합의 예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제 50 조 (가예산) 당해년도의 예산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후 집행한다. 다만, 가예산을 집행하였을 시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당해년도 예산에 계정시켜야 한다.

제 51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52 조 (회계규정) 조합의 회계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단체교섭

제 53 조 (단체교섭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부, 지회를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4 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조에 의해 지명된 지부 또는 지회가 교섭을 할 때에는 해당 지부, 지회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해당 지부장 또는 지회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선출하며 단체교섭 대표자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55 조 (요구안 확정) 단체교섭 요구안은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 다만,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요구안은 해당 사업장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

제 56 조 (체결권)

1.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 지부 또는 지회 등 특정 사업장의 단체협약 인준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장 총회의 인준 후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 위원장이 지부 또는 지회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부 또는 지회의 총회의 인준과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단체교섭 대표자가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 10 장 노동쟁의

제 57 조 (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 58 조 (쟁의발생) 위원장은 조합 및 각 지부, 지회의 쟁의발생에 대한 당사자가 된다.

제 59 조 (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결의한다.
2. 지부 및 지회의 쟁의행위 결의는 해당지역 또는 사업장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결의한다.
3. 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종료 후 재적 조합원 수, 투표에 참여한 수, 찬성 조합원 수 등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는 투표일로부터 1개월 이상 보존하며,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0 조 (쟁의기금) 본 조합의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상시 적립하며, 기금적립 사항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장 지부, 지회

제 61 조 (지부·지회 설치) 조합은 산하에 업무수행을 위한 자주적 조직으로서 지부와 분회를 설치한다.

제 62 조 (지부 및 지회의 의무) 각급 지부 및 지회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지부 및 지회 활동사항과 수지결산보고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6개월에 1회씩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부 및 지회의 중요 업무는 조합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며 일상업무라 하여도 조합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지부 및 지회는 대의원대회(총회)의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3 조 (과도조치)

1. 지부장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지부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지부 지부장단 전원이 유고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여금 과도기적 업무

를 집행케 한다.

2. 지회장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지회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지회장단 전원이 유고시에는 지부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부장이 위촉한 자로 하여금 과도기적 업무를 집행케 한다.

제 64 조 (지부 및 지회 운영규정)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지부, 지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부 및 지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한다.

1. 지부 및 지회의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및 지회 대의원회의(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 및 지회의 운영규정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 12 장 표창 및 규율

제 65 조 (표창) 조합의 발전에 유공한 자에 대하여는 표창 및 상품 등으로 이를 포상한다.

제 66 조 (징계)

1. 규약 제67조의 각 호를 위배하였을 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권한을 위임 받은 5~7인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토록 한다.
2. 전 1항의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시에는 만장일치로 한다.
3.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 지부 또는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67 조 (징계의 내용) 징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 명
 - 가. 조합의 조직을 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자.
 - 나. 조합의 지시지령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 운영을 방해한 자.
 - 다. 조합비 및 기금을 유용, 횡령, 착복한 자.
 - 라.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감행 또는 선동한 자와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한 자.
 - 마.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자 또는 폭력으로서 조합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한 자.
2. 권한정지
조합의 각종 기관의 결의 사항을 고의로 집행치 않거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 또는 조합비 납부를 거부한 자는 권한정지에 처한다.
3. 경고
 - 가.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
 - 나. 각종 회의에 고의로 불참한 자.

다. 조합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라. 조합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조직상의 물의를 빚게 한 자.

다만, 임기 중 경고 처분 3회 이상 받은 자는 권한정지에 처한다.

제 68 조 (재심)

1. 징계를 받은 지부 또는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 결정시까지의 징계 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제 13 장 해산 및 청산

제 69 조 (해산) 조합은 조직계획에 의하여 분할 및 합병할 때 총회의 의결에 의해 해산여부를 결정한다.

제 70 조 (청산)

1.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산위원회는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2013년 3월 2일 제정)

제 1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 2 조 이 규약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